



[참조1] 씨제이헬스케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CJ제일제당 제정 2002. 6. 10
 씨제이헬스케어 제정 2014. 4. 10
 1차 개정(부분개정) 2014. 7. 1
 2차 개정(부분개정) 2015. 4. 20
 3차 개정(부분개정) 2015. 8. 22
 4차 개정(조항신설) 2016. 6. 22
 5차 개정(부분개정) 2016. 10. 26
 6차 개정(전면개정) 2017. 7. 1
 7차 개정(부분개정) 2018. 9. 20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은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원칙 및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씨제이헬스케어(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 대리인 및 협력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 관련 제반 법률(이하 “경쟁법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회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된 법령인 약사법, 의료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2.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경쟁당국 등”은 경쟁법 등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말한다.
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4조(선임과 해임)

- ① 회사는 임직원의 관련법령,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세부운용기준을 포함하며, 이하 “규약)”, 본 규정 및 당사 CP가이드라인(이하 “CP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와 그 위반사항을 조사 및 보고하는 자(이하 “자율준수관리자”)를 둔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그 후임자 선임까지 CP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독립성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성을 갖는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중립성·자주성·독립성이 보장된다.

- 제6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3. 본 규정 개정안 발의권

4.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 요구 등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권한
5. 정기교육·특별교육·보수교육의 지시 등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권한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제7조(선관주의의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 제8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CP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개정,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및 지속개선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임직원 컴플레인, 핫라인, 내부신고/보호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예산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가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정신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CP팀을 둔다.

제2절 CP위원회

• 제11조(설치 및 구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 및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련부서의 임원 및 팀장으로 구성된 CP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CP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대표이사, 공동선임)가 한다.
- ③ CP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 자율준수관리자(전략지원실장(상무), 공동선임), 영업마케팅총괄, R&D 총괄, ETC영업본부장, Innovation센터장, 사업개발실장, 경영지원실장, 인사지원실장, 전국 영업SU장, 마케팅실장, 생산본부장, 임상개발실장, 경영관리팀장, 재무팀장, 영업지원팀장, 마케팅전략팀장, 인사팀장, Global사업팀장, SCM팀장, 경영진단팀장, 사업지원TF장, 법무팀장, CP팀장으로 구성된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CP위원회 구성원은 구성원의 건의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역할)

CP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3. 임직원의 자율준수에 관한 자문
4.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위반사항에 관한 심의 및 시정권고
5. CP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는 구성원 지명
6. 본 규정 개정안 의결 및 관련지침 승인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운영방법)

- ① CP위원회는 월1회 개최한다.
- ② CP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구성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CP위원회는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CP위원회는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정목적과 취지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다.

제3절 사전업무협의체(CP실무위원회)

• 제14조(설치 및 구성)

- ① 경쟁법 등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해 일상적인 업무에서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사항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CP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CP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은 CP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CP실무위원회 구성원은 구성원의 건의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역할)

- ① CP실무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임직원의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 ② CP실무위원회는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행위를 허용하기 전에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CP실무위원회는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장에게 사전 공유한 후, CP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장에게 직접보고 한다.

• 제16조(운영방법)

- ① CP실무위원회는 월2회 개최한다.
- ② CP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구성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CP실무위원회는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정목적과 취지에 따라 의사결정 할 수 있다.

제4절 임직원

• 제17조(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및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을 따라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CP팀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④ 모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법률위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자율준수관리자(혹은 CP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⑦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18조(자율준수의지의 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 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전달한다.
- ③ 전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거래 파트너와 일반 대중에게도 공지한다.

● 제19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은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의해 보관한다.
-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모니터링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위반과 관련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위반 우려가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CP실무위원회, CP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업무협약이 진행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와 CP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으로부터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시상 및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시상 및 제재의 기초가 된 평가결과를 CP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⑦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사항은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의한다.

● **제21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에 자율준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전향의 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은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의한다.

● **제22조(경쟁법 등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정권고
 - 2. 사유서 제출
 - 3. 경고
 - 4. 인사위원회 회부요구 및 의견제시
- ② 제재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의한다.

● **제23조(포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1.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준수여부 점검결과가 우수한 자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3. 공정거래 교육이수 우수자
 -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제안자
 - 5.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 관련 퀴즈 응모자 혹은 시험 응시 우수자
 -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자
- ② 포상 실시에 필요한 내용은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의한다.

● 제24조(내부 신고)

① 임직원은 본인의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수단을 통하여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에 신고해야 한다.

I. 이메일: cjhccp@cj.net (CP Talk)

II. 유 선: +82-2-6477-0000

III.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우)04551
(04551) 100, Eulji-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IV. CP Talk

V. 씨제이헬스케어 홈페이지 제보하기 시스템: <http://www.cjp.co.kr/>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은 임직원이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단, 신고자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25조(문서관리)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③ 보관에 필요한 내용 및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의한다.

● 제26조(운영성과 평가)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27조(공시)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통해 공시한다.

● 제28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 등과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세부지침에 대한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개정

- 제30조(개정의 필요성)

경쟁법 등의 개정 및 회사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화된 사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 제31조(개정절차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CP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②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CP위원회가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CP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에는 신속히 의결하여야 한다.
- ④ 전면개정의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본 규정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5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제2조(이사회 승인)**

전면개정 시 추가적인 이사회 승인 절차는 당해 전면개정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제재)**

본 규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본문에서 명문으로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